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4. 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127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7. 4.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채 진 룩

가. 제안이유

자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포구민의 날 조례 제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 골자

(1)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안 제2조)

(2)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3조)

(나) 기념의식 및 부대 행사, 문화예술 행사, 구민체육대회

(나)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3) 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안 제3조 제2항)

(4)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단체 등이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동 조례안은 1994년 4월 14일 제22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마포구가 개청한 날인 매년 10월 23일을 마포구민의 날로 지정 의결하고, 구민의 날에는 문화예술행사 및 구민체육 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의 발전을 촉진시켜 왔으나, 공직선거법의 제규정 등에 의하여 구민의 날 행사가 일부 제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의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효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7. 3. .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포구민의 날 조례 제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안 제2조)
- 나.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안 제3조)
  - 1) 기념의식 및 부대 행사, 문화예술 행사, 구민체육대회
  - 2)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다. 구민의 날 행사기간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안 제3조 제2항)
- 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단체 등이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4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사항 없음

##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7. 2. 8~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7. 3. 14)

##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마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행사를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위탁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용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